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80
----------	-----

2023년 3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6일 김지향 의원 외 29명
2.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3월 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지향 의원)

1. 제안이유

-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는 다자녀 혜택 대상이 기존 3자녀에 머물러 있어, 지원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제대혈 비용 면제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3자녀→2자녀)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마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 법률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2023. 2. 14. ~ 2023. 2. 19.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이식제대혈 공급 면제 기준”을 변경하여 정책수혜 대상을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이식제대혈 공급 면제”의 기준 변경
(안 제9조제1항제2호 마목)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이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마목에 명시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이식제대혈 공급 면제”의 기준을 변경하여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용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호 가목, 나목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감면)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주소지(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두고, 이식제대혈을 공급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 ----- ----- ----- ----- -----

<p>는 경우</p> <p>가. ~ 라. (생략)</p> <p>마. <u>다둥이 행복카드(자녀수 3명 이상) 소지자</u></p> <p>3. (생략)</p> <p>② (생략)</p>	<p>-----</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u></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2) 검토의견

-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¹⁾(’21년 OECD통계기준)은 약 0.81(명)으로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 특히, 서울특별시의 합계출산율(’21년 통계청)의 경우는 약 0.63명으로 대한민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서울시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²⁾에 대한 이식 제대혈 공급 비용면제 기준”을 변경하여 정책수혜 대상을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있음.
- 또한 본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다자녀 지원기준 확대³⁾ 방안과도 추진 방향성과 기준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⁴⁾ 상의 다자녀 가족 정의와도 부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1)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

2) 다둥이 행복카드: 민간기업과 함께 다자녀 가정(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 및 각종 문화생활 지원을 실시하여 개인과 사회가 함께 하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음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공식홈페이지 사업소개)

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다자녀가구 지원 관련 반영내용(’20.12.15, 발표) :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아동 1인당 실질적으로 보다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

4)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 그러나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다둥이 카드 소지자를 포함하여 ‘이식제대혈 공급’ 비용을 면제받은 사례가 없어 대상자 규모와 지원 방법 미정으로 인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되었음.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에 따라 ‘이식제대혈 공급’ 비용면제 수혜 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에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에 대한 추계 및 검토가 향후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정책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역시 좀 더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집행기관 의견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제대혈 공급수익금 면제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변경하여 면제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이식제대혈 공급 면제”의 기준을 변경하여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의 중앙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성과도 부합하는 것임.
- 다만, 최근 3년간 “이식제대혈 공급 면제” 건수가 없음에 따라 비용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향후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이와 더불어 정책 대상 발굴 및 홍보 강화도 필요해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향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8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김지향, 고광민,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영한, 박칠성, 박환희,
서준오, 송경택, 옥재은,
유정인, 윤기섭, 이봉준,
이상욱, 이영실, 이용균,
이종태, 최민규, 황철규
의원(30명)

1. 제안이유

-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 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는 다자녀 혜택 대상이 기존 3자녀에 머물러 있어, 지원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제대혈 비용 면제 대상을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 대상을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3자녀→2자녀)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마목).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비용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호 가목, 나목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주소지(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두고, 이식제 대혈을 공급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마. <u>다둥이 행복카드(자녀수 3명 이상) 소지자</u></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9조(비용의 감면) ①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p> <p>-----</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u></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문서번호

2023013100000014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김지향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선동규 주무관

접수일 : 2023.01.31.

회신일 : 2023.02.13.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비용의 감면)제1항제2호마목을 ‘다둥이 행복카드(자녀수 3명 이상) 소지자’ 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으로 개정함에 따라 사업 추진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비용의 감면)제1항제2호마목 개정 내용에 따라 비용(제대혈 기증에 따른 세외수입감소)이 발생 하나, 최근 3년간 제대혈을 공급받은 대상자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포함하여 면제 받은 사례가 없어 해당부서 확인결과 대상자 규모와 지원방법 미정으로 비용추계 어려움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제대혈 공급실적>

구 분	‘20년	‘21년	‘22년
공급인원	41명	52명	36명
공급실적	57Unit	77Unit	55Unit
공급비용(세외수입)	117,879,990원	159,241,390원	113,743,850원

※ 제대혈 1Unit - 2,068,070원, 최근 3년간 공급실적 중 면제받은 사례 없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주 무 관 선 동 규

☎ 02-2180-7953

e-mail : abasiclife@seoul.go.kr